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- 한국에너지재단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서

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(이하 'SH공사')와 한국에너지재단(이하 '재단')은 SH공사 임대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하여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이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협약은 재단이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거주자 중 저소득 취약가구에 단열, 창호공사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업무에 관하여 상호협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협력분야)

SH공사와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- 가.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대상 세대 선정·추천
- 나. 에너지 절감을 통한 서울시 에너지 정책 및 저탄소 주거환경 조성 협력
- 다. 저소득 취약가구에 대한 에너지복지 확산 및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협력
- 라. 기타 저소득 취약가구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

제3조 (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 (실시원칙)

- ①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-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 중 세부내용이 필요하거나,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제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.

제5조 (비밀유지)

SH공사와 재단은 상호 업무협력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제6조 (협약서의 효력)

이 협약서는 체결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, 양 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·해제·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적용한다.

제7조 (협약의 변경)

- ① SH공사와 재단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.
- ② 이 협약의 변경은 양 기관의 대표가 기명날인한 서류에 의하며, 변경의 효력은 그 서류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명날인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.

제8조 (권리·의무의 승계)

이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명칭,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협약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포괄 승계할 수 있다.

제9조 (협약 기간)

본 협약은 상호 이의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한 쪽이 희망할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그 경우 해지를 희망하는 쪽은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.

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26일

서울특별시
SH 에스에이치공사

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

사 장 변 창 훈

변 창 훈

Korea Energy Foundation
한국에너지재단

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

이사장 박 종 근

박 종 근